

2020년도 제3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12. 14.(월)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 위원(분과위원장), 김택수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2건(안건번호 제2020-165881호~제2020-16593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본건 심의안건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영상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건번호 제2020-165881호~165930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심의 대상 50개의 안건은 최신 영화의 불법 복제 전송에 대한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영화의 52개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65881호부터 제2020-165930호{♠♠♠ 사이트의 "(영화) 테넷" 등 52건의 게시물}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금번 심의안건은 테넷 등 중점 모니터링 대상 영상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파일썬 등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안건번호 제2020-165881호~165930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영화)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2020년 제35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14.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김택수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